

#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

## (2026년 제4회)

<b>1. 안 건 명</b>	평택시 포승읍 회곡리 838-1번지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변경심의			
<b>2. 심의개요</b>	<b>심의일시</b>	26. 4. 30. ~ 5. 6.	<b>심의장소</b>	서면심의
	<b>신 청 자</b>	(주)서울업업	<b>참석위원</b>	5명
<b>3. 조건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조계산서 내 10.5 기둥-보 강접상세(2동:p46, 3동:p47)와 Girder+Column 접합상세(p.62)의 강축방향, 약축방향 모두 상세가 다르며 같은 type 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통일이 필요. 또한 강축방향 접합에서 web접합상세가 T joint형태의 single side butt welding으로 편심의 영향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경우 피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응력인지 확인 필요.</li> <li>- WBR1 교차부 상세(p.63)와 flange 안쪽용접의 경우 현장용접 가능 여부 확인 필요.</li> <li>- 평판재하시험은 도면상 동당 1개소만 실시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, 기준에 따라 건축물 및 일반구조물(KS F 2444 기준) 1개 동당 최소 3개소 이상 실시하기 바람.</li> <li>- 연약지반 개량공법(CCM)의 개량체 강도 설정근거, 개량율 및 개량심도 결정과정, 장기침하량 및 차등침하 검토 등에 대한 정량적 검증자료 부족하여 보완 바람.</li> <li>-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설계뿐 아니라 시공단계 품질확보가 구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반개량체 품질관리 기준, 주요 구조부 시공순서 및 단계별 안전성 검토, 계측관리(침하, 변위 등)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필요 ⇒ 시공단계 구조안전 확보계획을 별도 항목으로 보완 필요</li> <li>- 내진설계 및 비구조요소 안전성 확보 미흡 : 설비·배관·덕트 등 비구조요소의 고정 및 지지상세, 외장재 및 천장재의 탈락방지대책, 층간변위 대응 상세 등에 대한 시공수준의 구체적 기준 제시가 필요 ⇒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구조설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 필요</li> </ul>			
<b>4. 심의결과</b>	[ 조건부의결 ]			

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

2026년 5월 6일

##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